

HAPPY700 사랑 나눔운동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44
----------	----

제출연월일 : 2011. 2.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가. 법적기준을 초과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필요로 하는 주민에 대하여 수요자중심의 서비스 제공
- 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기부금품 모집행위 시정요청에 의해 지속적인 「HAPPY700사랑 나눔운동」 추진 근거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군의 책무(안 제3조)

- 법적 기준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나눔운동 지원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와 연계 사업추진

나. 운영위원회 구성(안 제4조)

- 나눔운동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 심의 및 군수 자문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

다. 운영위원회의 기능(안 제5조)

- 나눔운동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수혜자 선정에 대한 심의·지원금 결정 등 심의·조정

라. 사기진작등(안 제8조)

- 나눔운동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적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 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계부서협의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 2010.11.1~11.22(21일간), 제출된 의견 없음

마.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HAPPY700 사랑 나눔운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HAPPY700 사랑 나눔운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HAPPY700 사랑 나눔운동(이하 "나눔운동"이라 한다)이란 1구좌 700원을 후원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저소득층에게 후원하여 공공복지자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2. "후원자"란 나눔운동을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3. "수혜자"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나눔운동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나눔운동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잠재적인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수혜자에게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민·관 협력방식의 맞춤형 통합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나눔운동을 추진함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을 받은 사회복지 법인 또는 단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나눔운동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나눔운동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평창군의회의 의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1. 나눔운동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

2. 나눔운동 수혜자 선정에 대한 심의

3. 나눔운동 수혜자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나눔운동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나눔운동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나눔운동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군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사기진작 등) 군수는 나눔운동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수급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6.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7. "개별가구"라 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9.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함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8>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해마다 공표되는 최저생계비(이하 "최저생계비"라 한다) 이하인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의 구휼사업(救恤事業)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 나.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다.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마.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바.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사.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아.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